

※ 오프라인 신청 시 공통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법인 추가 서류

- 1) 대표자 신분증
- 2) 통합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 3) 법인인감증명서

(유형 1) 신청 시부터 신속보상을 거치지 않고 과세 인프라가 불충분하여 확인보상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 (참고) 확인보상 대상자로 자동 분류되는 경우, 사유별 제출 필요 서류 >

사유	제출 필요한 서류
❶ 과세신고 자료로 보상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 ※ 5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아도 접수 가능	1) 2019, 2020, 2021년 중 해당되는 연도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필증을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 계산서 2)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3) 임대차계약서 4) 임차료 지출에 대한 통장사본 5) 임차료 지출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 등
❷ 세부시설이 직접판매홍보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장	시설분류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지자체는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시 신청인 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및 현장사진을 제출 받아 확인 후 발급 필요
❸ 세부시설이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장	시설분류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지자체는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시 신청인 으로부터 건축물대장을 제출받아 확인 후 발급 필요
❹ 비영리법인 사업장(비영리법인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만 인정 가능)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❺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관할 지자체 발급)

(유형 2) 신속보상에서 산출된 보상금과 관련하여 영업이익률, 인건비, 임차료를
정정하여 확인보상 신청하는 경우 ①의 서류 모두 준비

신청·접수 경로	대상 유형	제출서류
온라인 오프라인	①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및 인건비 관련>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1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지역가입자) 또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 가입 의무가 있으므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로 대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특정 직장 소속의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라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을 뿐 그로부터 인건비 금액을 판단할 수도 없으므로 대체할 수 없음 ▶ 인건비정정 외의 목적인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대체 ▶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경우 일용급여로 신고하였다면 인건비로 반영되나, 그렇지 않으면 제외 ▶ 아르바이트생(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그 중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1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에 해당 (산재보험법 제6조)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 자가인 경우 : 건축물등기부등본 (가족명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단, 손익계산서상 임차료가 0이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손실보상 신청자 본인이거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이어야 가능함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체한 경우, 송금확인증(PDF파일)으로 대체	
온라인 오프라인	② 시설분류 정정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해당부서에 신청서류 사전 확인)
온라인 오프라인	③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해당부서에 신청서류 사전 확인)
온라인 오프라인	④ 상점·마트·백화점(300m ² 이상)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건축물대장 (해당부서에 신청서류 사전 확인)

신청·접수 경로	대상 유형	제출서류
온라인 오프라인	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임대차계약서 ■ 현장사진 (해당부서에 신청서류 사전 확인)
온라인 오프라인	⑥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관할 지자체 발급) (해당부서에 신청서류 사전 확인)
온라인 오프라인	⑦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온라인 오프라인	⑧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통합위임장
오프라인	⑨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3) 본인 명의 휴대폰 사용자 : 신분증
오프라인	⑩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오프라인	⑪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오프라인	⑫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손익계산서 관련 중기부 답변>

법적으로는, 간편 장부 대상자도 복식 부기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기장 할 수 있음
(소득세법제56조의2제1항)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영업이익률 등을 정정하기 원하는 확인보상 대상자의 주장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이외의 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한 바 있음

과세신고 목적 외의 기장 자료는 신빙성이 낮으므로, 증빙자료 서식까지 간소화할 경우 보상금 지급 근거로 삼기 곤란

손익계산서 역시 보상금 지급 근거로 삼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증빙기회를 부여하고자 손익계산서에 기장한 자료에 한하여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

<인건비 반영 세부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 (표준손익계산서)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의 급여, 일용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 (표준원가명세서) "노무비" 계정의 급여, 일용급여, 퇴직급여, 기타

○간편장부대상자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일반관리비등" 계정의 급료, 복리후생비 및 "제조비용" 계정의 노무비

<임차료 반영 세부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 (표준손익계산서)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의 임차료, 리스료
- (표준원가명세서) "노무비" 계정의 임차료

○간편장부대상자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일반관리비등" 계정의 임차료